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67
----------	-----

제출년월일 : 2015.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 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나. 「지방재정법」(법률 제12507호, 2014.3.24. 공포, 2014.11.29. 시행)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

다.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14. 11.7공포)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청·장년이란 만15세이상 만34세이하 청년, 만55세이상 만64세이하 장년

나. 보조금 지원기준(안 제4조)

① 대상기업 중에서 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 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다. 보조금 분담 (안 제9조)

군수는 제4조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를 분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

제9조(보조금의 분담)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시·군에 그 소요 경비의 60%를 분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추진 일정

1)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반영완료)

- 제8조 제1항(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의 지원금의 환수를 재량규정에서 기속규정으로 명시 ⇒부패행위자의 수혜자격 박탈 근거 명시

2)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실시 : 원안동의

3) 입법예고 : 2015. 9. 14 ~ 2015. 10. 5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법제심사 : 2015. 11.11

- 심사결과 반영(체계, 형식, 자구 등 조문의 축조 검토 일부 수정)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평창군 소재 업체가 평창군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과, 만55세 이상 만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2.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대상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의미하며, 대상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상기업”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4. “고용대상자”란 군에 주소를 둔 청·장년 중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5. “일자리 보조금”이란 대상기업이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군 소재 업체에 군내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3. 일자리 보조금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기업 중에서 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로 한다.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 ①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 기준)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하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도비보조금 지원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예산집행) ① 군수는 대상기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대상기업에 예산집행이 불가 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② 군에서는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예산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 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대상기업이 지급 받은 일자리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 한 기업에게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분담) 군수는 제4조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의 일부를 분담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및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평창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② 지원기준은 1개 대상기업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을 일자리 보조금으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연락처	(033) 330-2554